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연방법부무, 연방 독점금지법 집행자들을 위한 지침 마련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연방법 집행자들을 위한 독점금지법의 기본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An Antitrust Primer for Federal Law Enforcement Personnel)을 제정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연방법 집행자들이 연방법상 중죄로 처벌되는 독점금지법상의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은 잠재적으로 국내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며 경제에 있어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유기업시스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적발, 조사 및 소추하여 국내 경제를 보호

하기 위해서 독점금지국은 협력자들과 다른 연방법 집행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들에게 이 지침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침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셔먼법

셔먼법 제1조는 경쟁자간에 있어서 경쟁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도 금지하고 있다. 즉, “주간 통상 또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 합의 …… 또는 공모도 불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은 셔먼법 제1조 위반이며 일반적으로 형사소추 된다. 셔먼법에 의한 형사집행은 DOJ 독점금지국의 관할이다.

· 합의 : 합의는 셔먼법 제1조 위반의 핵심이 되며,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을 꾀하려는 시도는 이 법 하에서는 소추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우편이나 유선통신이 이러한 시도의 수단으로 이용된 가

격고정이나 입찰담합에 있어서 독점금지국은 우편 및 유선통신 사기법을 적용한 바 있다.

· 처벌 :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은 중죄로서 다루어지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달러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는 35만 달러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방법 18 U.S.C. §3571의 선택적 벌금 규정에 따라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총 손해액이나 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고정을 이유로 최근에 부과된 가장 큰 금액은 기업에 있어서는 5억 달러였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 달러가 부과된 바 있다.

· 피해자 :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의 피해자는 사인 또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독점금지국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추를 하고 있다.

· 민사적 구제와 3배 배상제도 : 형사소추, 징역 및 벌금 이외에도 민사적 구제나 3배 배상제도를 통해 독점금지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다. 연방정부나 그 기관들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독점금지국은 클레이튼법(15 U.S.C. §15a)에 의해 손해배상의 3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False Claims Act(31 U.S.C. §3729)에 따라 최고 3배에 해당하는 민사적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주 또는 지방정부와 사인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3배 배상을 위한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등의 추정의 법리가 적용된다.

2.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

- 당연위법 :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된다. 이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당연위법으로서 다루어진다. 그러한 합의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제한하면서 이를 상쇄시켜줄 소비자 이익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 항변사유의 제한 :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과 같은 합의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

며, 결국 이들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도 당연위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당연위법인 경우 피고는 행위의 정당성이나 필수불가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러한 가격고정이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거나 실제로는 경쟁을 촉진한다거나 또는 그 가격고정이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해 가격고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셔먼법 제1조의 위반요건 : 셔먼법 제1조에 의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오로지 거래를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을 위한 경쟁자간의 합의에서 특히 그려하다. 그 합의는 2 이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들간의 합의이어야 한다. 명백한 행위가 입증될 필요도 없으며, 명백한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다. 참가자들에 의한 직접 증거나 (입찰시 경쟁자들 사이에 순환적으로 입찰을 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등) 정황증거들에 의해서도 위반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셔먼법에 의한 소추에서 소추자는 구두의 합의나 명시적 작위를 주장한다. 합의는 통상 공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된다. 정부가 의존하는 증인은 현재 또는 이전의

중간관리자나 고위관리자들인 경우가 전형적이다. 명백한 작위에는 회사 대표자들간의 비밀회합, 가격목록표의 발행, 입찰서 제출, 입찰자의 수와 고객정보를 교환하는 공모자들간의 전화통화 내역 및 공모를 숨기기 위한 암호문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명백한 작위의 증거물로는 입찰 서류, 가격표 목록, 견적서, 운송장, 전화통화 내역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들은 중요한 증거물이 되며, 증인들의 증언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가격고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의 조사

이들에 대한 독점금지국의 조사의 차수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다른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에 의해서나 신고, 직권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령 독점금지국은 사기, 도박, 돈세탁 또는 탈세 등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던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건의 단서를 인계받는다.

또한 독점금지국과 그 수사에 공조하는 FBI와 같은 법집행기관들은 다른 유형의 형사범죄에서 증거를 모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2003. 8. 연방법무부



■ FTC, 사우스 캐롤라이나 치과협회 기소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치과협회를 기소했다. 이 협회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각급 학교들에서 클리닝, 씰란트 및 불소처리와 같은 예방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위생사들의 활동범위를 불법적으로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FTC는 치과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치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 구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익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구강 보건에 있어서 충분한 예방적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치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1988년 주의회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면허를 가진 치위생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당시 법에서는 치위생사는 45일 이내에 치과의사가 진료한 어린이들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00년에 의회는 치위생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치료하기가 보다 쉽

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45일 이내에 치과의사로부터 사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치위생사들은 개정법에 근거하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학교에서 예방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치위생사들은 1만 9천명이 넘는 학생들을 치료하였고, 4천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불소처리 또는 클리닝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 중심적인 진료서비스는 일반 가정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치과협회는 이 주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과 치위생사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기구이다. 이 협회는 규제당국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위원들 중 7인은 치과의사였는데 이 중 6인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들에 의해 선출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 밖에 치위생사 면허소비자 1인과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협회는 치과의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TC의 주장에 따르면, 이 치과협회는 환자가 학교에서 치료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치과의사가 이를 먼저 진료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긴급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의회에서의 개정 취지와는 반

대되는 규정을 부활시켰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원은 이러한 규정은 의회가 삭제한 규정을 다시 되살리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가 친경쟁적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자 FTC는 이 치과협회를 기소하였다.

2003. 9. 15. 연방거래위원회

EU

■ 제1심법원, 리신(lysine) 카르텔에 대한 제재금 감액 판결

- 제1심법원, 리신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제재금액의 결정기준을 명확화 -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에서 731만 6,760 유로를 감액했다.

리신은 영양상의 목적으로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주요한 아미노산이다. 합성리신은 곡물과 같은 천연리신이 적은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물로서, 영양사는 동물의 음식물로 필요한 단백질 위주의 사료를 만들 수 있다.

1995년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의한 내정조사에 이어 리신 시장에서 여러

사업자의 사업소에 대한 수색이 미국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조사에 이어 미국 당국은 Archer Daniels Midland, 협화발효공업, Sewon, Cheil Jedang 및 味の素가 1992년 6월부터 1995년 6월에 걸쳐 리신의 가격카르텔 및 시장을 분할했다고 하여 소추했다.

1996년 7월 味の素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리신 시장에서 가격카르텔의 존재 및 당해 카르텔이 유럽경제지역에 미친 영향의 입증에 관해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 유럽위원회는 관계사업자에 대해 아미노산 시장에 있어서 행동 및 카르텔 회합에 대해 정보제공요구를 송부했다.

2000년 6월 7일 결정에서 유럽위원회는 1990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합성리신의 가격 및 판매수량에 관한 일련의 협정 및 판매수량에 관한 개별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결정에서 유럽위원회는 이사회 규칙 17호15조2항에 입각, 제재금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했다.

유럽위원회는 우선 모든 사업자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위반의 실행기간 마지막 해의 총 매출액에 근거, 각 사업자의 규모에는 상당한 정도의 교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다르게 취급을 했다. 유럽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후 반행위 기간도 감안하여 각각의 사업자에 대한 제재금의 기본액을 결정했다. 그 금액은 카르텔에 있어서 사업자가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인 역할에 불과했는지 등 가중 또는 경감을 고려해서 증액 혹은 감액 또는 양쪽 모두가 행

해졌다.

유럽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카르텔에 관여한 기업에게 총액 약 1억 1,00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제1심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Archer Daniels Midland, 협화발효공업, Sewon, Cheil Jedang은 제재금 결정에 이용된 절차에 불복을 신청했다. 특히 이 중에 2개사는 유럽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은 사실, 즉 본 건과 동일한 세계규모의 카르텔 참가로 이미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한번 심리를 받은 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소추되거나 벌금/제재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유럽위원회가 개시하는 절차와 부과하는 제재금과 EU 비회원국(본 건에서는 미국)이 행하는 것들은 동일

시건번호	원 고	유럽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제재금액	제1심재판소의 판결
T-220/00	Cheil Jedang Corporation	1,220만 유로	1,008만 유로로 감액
T-223/00	Kyowa Hakko Kogyo Co.Ltd Kyowa Hakko Europe GmbH	1,320만 유로	1,320만 유로
T-224/00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 Archer Daniels Midland Ingredients Ltd	4,730만 유로	4,387만 5,000유로로 감액
T-230/00	Daesang Corporation Sewon Europe GmbH	890만 유로	712만 8,240유로로 감액
	합 계	8,160만 유로	7,428만 3,240유로로 감액



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위원회가 제재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EU회원국의 카르텔법 위반으로 당해 사업자가 이미 제재 받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비회원국의 당국과 법원에 의해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까지 고려할 의무는 유럽위원회에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모든 관계사업자에 대해서 경감사유에 의한 감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가중·경감사유에 의한 제재금의 증액·감액의 퍼센트는 위반의 중대성 및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된 기본액에 적용되어야 하며, 위반의 기간에 따라 증액된 증액폭과 가중·경감사유를 반영한 최초의 증액, 감액을 한 후의 금액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 제재금의 산정방법은 동일한 카르텔에 참가한 복수의 사업자 간의 평등한 취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3. 7. 9. 유럽 법원

(월간 「공정취인」 2003. 8월호 발췌)

■ 몬테위원, 경쟁분야에 있어서 일본-EC협정의 서명을 환영

EU와 일본은 금일 양 지역내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경쟁

당국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것은 EU가 미국, 캐나다와 각각 같은 형태로 체결한 협정에 이은 3번째 협정이다. 「이 협정은 EU·일본간의 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강화된 협력이 신시대를 맞이하고, 양 지역 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를 열망한다.」고 몬테 위원은 언급했다. 동 협정은 1999년에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

EU와 일본은 유럽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상대측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 당국의 집행활동에 관해 상호 정보제공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형적으로는 향후 유럽위원회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일본 기업에 대한 합병 심사, 절차, 또는 기타의 다른 반경쟁적 행위가 일본에서 행해진 사안에 대해 정형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동 협정은 쌍방의 국내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의 집행활동의 조정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EU와 일본은 상대방 각자의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집행활동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또한 동 협정은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정책문제와 집행성과, 우선 분야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접촉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EU가 체결한 세 번째의 협력협정으로 이미 존재하는 EU·미국간, EU·캐나다간의 협정과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현행 협정과 같은 형태의 동 협정에서는 관계기업에 의한 명확한 허가가 없는 한 비밀정보의 교환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waiver(비밀성유지의 권리 포기)는 합병심사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몬테 위원은 1999년 10월 일본 방문시 동 협정의 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논을 했다. 그 후 2000년 6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유럽위원회에 대해 일본정부와 협정체결교섭을 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협정안은 2002년 6월에 가서명한데 이어 2002년 6월에 유럽의회로부터 승인되고 2003년 7월에 유럽이 사회로부터 승인받았다.

본 협정은 30일후에 발효한다.

2003. 7. 10.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 8월호 발췌)

유럽위원회, 야마하의 유통제 한 및 재판매가격유지에 제재 금부과

유럽위원회는 악기 제조업자인 야마하가 피아노, 기타(guitar), 오보에(oboe) 등의 상품에 대해 유럽단일 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함과 아울러 일부 EU회원국에서 재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동 사에 대해 256만 유로(1유로=132엔으로 약 3억 3,800만엔)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본 건 제한의 성질이 중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의도적인 전략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의 판매업자(dealer), 상품 및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완전하게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야마하는 유럽위원회에 의한 심사개시 후 즉시 이러한 제한을 종결함과 동시에 유럽에서의 유통시스템을 변경했다.

야마하는 유럽에서 선택적 유통시스템에 의해 피아노, 전자오르간,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등의 폭넓은 범위의 전통적인 악기 또는 전자악기 및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동 사는 대부분의 악기에 대한 유럽에서 제1위의 사업자이다.

유럽위원회는 심사결과, 야마하가 시장의 분단과 재판매가격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또는 협조적 행위를 함으로써 EU경쟁법을 위반했다

고 결론 내렸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및 아이슬란드에서 행한 이러한 제한행위는 EC 조약 제81조1항 및 EEA(유럽경제지역협정) 제53조1항에 정해진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각국에 의해 다른 시기에 다른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정식 판매업자에게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정식 판매업자에게 야마하의 관련회사에게서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구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정식 판매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야마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재판매가격의 결정

유럽 시장을 분단하는 협정 또는 제한적 행위 및 재판매가격의 결정은 다수의 판례에서 EU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

본 건 행위가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야마하의 계약조항의 일부는 제한된 수의 판매업자 및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모든 야마하의 계약에 조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동시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위원회의 심사개시 후 곧바로 야마하가 제한의 대부분을 종결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경감사유로

고려되었다.

2003. 7. 16.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 8월호 발췌)

EU위원회, 새로운 전기통신규제체계에 맞추어 첫 번째 사건 검토

위원회는 전기통신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접수된 첫 번째 사건을 검토했다. 영국의 통신규제당국인 Oftel은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는 영국 이동통신 도매시장 중의 하나인 이동통신망에의 접속 및 호의 발생(call origination)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Oftel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서한을 지난 8월 29일 Oftel에 발송했다.

Mario Monti 경쟁위원은 “새로운 규제체계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국 규제당국이 더 이상은 불필요한 통신분야에서의 규제들을 폐지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rkki Liikanen 위원은 “Oftel의 결정은 새로운 규제체계에서는 예상된 것으로서, 이는 신규진입이 발생하고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증명되면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의 공중 이동통



신망에의 접속 또는 이를 이용한 발신을 위한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동통신망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된다. 영국에는 이러한 발신이나 접속을 위해 필요한 이동전화망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서 Vodafone, O2(BT Cellnet의 후신), T-Mobile 및 Orange사가 활동하고 있다.

Oftel은 이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존재하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미있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어느 개별 사업자도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한 비용상, 기술상 또는 다른 경쟁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Oftel은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가격결정력, 소매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소매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자들이 결합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보았다.

새로운 규제체계에 따르면, 회원국의 통신규제당국들은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협존의 규제들을 폐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Oftel은 Vodafone과 O2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철회하기로 했다.

EU위원회는 새로운 EU 통신규제 체계 하에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Oftel의 조사 방법론과 시장획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코멘트를 한 바 있다.

한편, 2002년 3월 7일에 채택된 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 규제체계에 관한 지침은 경쟁의 촉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지침 제7조에서는 또한 각 EU회원국내 통신규제당국과 EU위원회 간의 관계도 설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당국들이 경쟁법 원칙들을 적용하여 자국의 국경 내에서 전기통신시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 규제당국들이 사전 규제가 허용되는 시장에서 위원회의 권고와 다르게 관련 시장획정을 하거나 또는 어느 사업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7조에 따라 반드시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들의 규제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규제당국은 당해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분야에 특유한 규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존재하는 의무는 폐지하여야 한다. 반대로 당해 시장이 경쟁적이 아니라면 존재하는 규제의무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의 규제당국들은 자신의 의견을 코멘트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코멘트를 받은 규제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그가 위원회에 통지한 조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03. 9. 5. EU위원회

일본

■ 공정위, 교량용 고무지승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교량용 고무지승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동 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였다.

이들 13사는 2001년 5월 9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 무렵까지 영업담당 과장급 이상의 종업원들이 출석한 일련의 회합 및 상호간의 연락에 의해, 특정 교량용 고무지승에 대해 가동·고정지승, 분산지승 및 미끄럼지

승에 대해서는 공통된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방법의 70%, 면진지승에 대해서는 같은 산정방법을 이용해 산정한 방법의 80%를 목표가격으로 하여 공동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건설업자 등 수요자마다 간사회사를 배정한 후 수요자로부터 특정교량용 고무지승의 거래문의를 받은 취지를 해당 간사회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복수의 사업자가 등록했을 경우에는 등록한 사업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그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교량용 고무지승의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해 일본에서의 특정 교량용 고무지승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특정 교량용 고무지승이란 지진 등에 의한 진동이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량에 설치되는 장치인 교량용 고무지승 중에서 가동·고정지승, 분산지승, 미끄럼지승 및 지진에 의한 진동방지용 면진지승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3사는 2002년 9월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매업자 및 교량건설업자 등에게 확실히 주지시키는 동시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권고에 대하여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권고를 승낙한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며, 불응한 경우에는 심판 수속을 개시한다.

2003. 9. 1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입찰참가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위는 지난 9월 10일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하는 석유저장시설 보전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하는 석유저장시설 등의 보전공사, 간사공사 및 신·증설공사에서는 평소부터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견적서를 맞추는 등의 방법(이하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참가자로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들간 입찰에 있어서 경합하지 않게 입찰가격을 조절해 왔다. 카시마 엔지니어

링 주식회사 외 6사(이하 7사)는 1998년 4월 1일 이후 국가석유비축회사(일본 지하석유비축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석유저장시설 등의 보전공사, 간사공사 및 신·증설 공사를 발주한 1999년 4월 27일 이후)가 7사 중 핵심엔진니어링회사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들을 지명해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석유저장시설 등의 보전공사, 간사공사 및 신·증설공사(이하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한 특정 보전 등 공사)에서 국가석유비축회사의 각각의 핵심엔진니어링회사가 계속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① 국가석유비축회사로부터 지명경쟁입찰 등의 참가자로서 지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석유비축회사의 핵심엔진니어링을 수주해야 할 자로 하고, ② 수주해야 할 가격은 수주할 자가 정하고 수주예정자 이외의 사업자들은 그 수주예정자가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하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위 7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한 특정 보전 등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국가석유비축회사의 핵심엔진니어링회사란 국가석유비축회사의 주된 출자자인 석유원매회사 또는 석유정제회사의 계열 엔진니어링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2001년 6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이 날 이후 7사는 위의 합의에 근거한 행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가석유비축회사가 발주한 특정 보전 등의 공사는 수주예정자를 미리 결정하여 그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국가석유비



축회사가 발주한 특정 보전 등 공사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7사에 대해 총 5 억 7,792만 엔의 과징금을 11월 10 일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2003. 9. 11.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관동조원건설협동조합 에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위는 관동조원건설(關東造園建設)협동조합(이하 피심인)에 대해 작년 5월 20일 심판개시 결정을 한 이후 심판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월 8일 과징금 320만 엔을 납부하라는 심결을 하였다.

피심인은 2001년의 본안 심결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후지식목 등과 공동하여 동경도가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할 예정가격이 8,000 만 엔 이상의 조경공사(이하 대형 조경공사)에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동경도가 발주한 대형 조경공사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실행기간은 1997년 12월 13일부터 2000년 12 월 12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있어서

피심인의 매출액은 1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인 1억 689만 엔이었다.

그런데 과징금 산정에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인 1억 689만 엔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편 피심인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율이 매출액의 6%인데 반해 피심인은 경감산정율인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또한 쟁점이 되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되는 것인 경우 사업자에 대해 실행기간에 있어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 액수에 상당하는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행위의 대상은 본안 심결서에서 동경도가 발주한 대형 조경공사로 되어 있다. 피심인이 실행기간중에 체결한 동경도 발주의 대형 조경공사와 관련된 계약은 이 사건 계약 1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계약의 대가인 1억 698만 엔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피심인은 위반행위자 가운데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피심인 뿐이며, 다른 행위자인 공동기업체의 구성원들은 계

약액의 일부인 해당 구성원의 매출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없으며, 본안 심결에서 인정하는 위반행위자는 피심인에 있어서는 구성사업자들이 아니고 피심인 자체이며, 공동기업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 중 동경도로부터 제1그룹의 업자로서 선정된 사업자인 것이 문면상 분명하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피심인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협동조합의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사업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조합 회계상 법정 목적에 따른 이익 이외에는 적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므로 이 사건 계약액 전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익을 취득한 조합원의 매출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이 정하는 산정기준이 아닌 사업자의 사업목적이나 이익배분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심인은 자신에 대한 과

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본 건 계약에 의한 계약액수의 40%(제1위 구성사업자의 매출액 상당액) 또는 25%(조합이 받는 수수료의 상한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3. 9. 1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동경자석주식회사에 배제명령

공정위는 동경자석주식회사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 3호(원산국의 부당 표시)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제명령을 내렸다. 동경자석공업은 거래처 판매업자들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오인되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동경자석공업은 제품 포장상자에 「Made in Japan」 또는 「제조원 동경자석공업주식회사」라고 표시하였는데, 이 제품들은 실제로는 대만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①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적인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공표하고, ②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이를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며, ③ 향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적인 표시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2003. 9. 9. 공정거래위원회